

국 토 교 통 부

훈계요구·통보

제 목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

기 관 명 부산진구청, 영도구청, 연제구청, 남구청, 동구청, 강서구청, 해운대
구청, 금정구청, 동래구청, 수영구청, 사하구청

- 훈 계 대 상 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○○○동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-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가휴직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- ③ 부산광역시 ○○○사업본부(전 연제구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- ④ 부산광역시 남구 ○○○동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- ⑤ 부산광역시 동구 ○○○동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-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○○○동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-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○○○○과(전 연제구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-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- 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
- ⑩ 부산광역시 동래구 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7. 21.부터 2015. 6. 30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7. 1.부터 2017. 1. 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8. 3.부터 2015. 2. 2.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자 명단을 통보¹⁹¹⁾받아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0. 27.부터 2015. 8. 2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1.부터 2015. 6. 30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2. 26.부터 2015. 12. 3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8. 3.부터 2016. 8. 2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8. 3.부터 현재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1.부터 현재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9. 1.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자 명단을 통보받아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다.

가. 여객자동차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¹⁹²⁾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[별표3] 제3호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

191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8조(권한의 위탁)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,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요청 등 기록관리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, 교통안전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통보하면 부산광역시에서 관내 구청·군청으로 이첩하여 통보

19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·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,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·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및 법 제88조에 따른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재위임

또는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1건의 교통사고로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일부정지¹⁹³⁾, 감차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[별표5]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,200만원 이하의 과징금¹⁹⁴⁾을 부과·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부산진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5. 1. 27.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동 000-0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 소속 버스(운전자: ○○○, 차량번호: 부산00바0000)가 2014. 12. 12. ○○고속도로 ○○북도 ○○군 ○○면 지점에서 안전운전 의무위반 교통사고로 1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·징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산광역시 ○○○구 등 3개¹⁹⁵⁾ 구·군에서는 [표]와 같이 3건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통보사항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.

【표】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역

193) 중상자 6명 이상 9명 이하 : 사업일부정지 60일, 중상자 10명 이상 19명 이하 : 사업일부정지 120일,
중상자 20명 이상 29명 이하 : 3대 감차, 중상자 30명 이상 39명 이하 : 4대 감차, 중상자 40명 이상 : 5대 감차
194) 중상자 6명 이상 9명 이하 : 과징금 800만원, 중상자 10명 이상 19명 이하 : 1,200만원
195) 부산진구, 영도구, 연제구

연 번	사업자	사업자 주소	운전 자	차량 번호	사고일자 (통보일자)	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용	행정처분 관할청	비고 (관련자)
1	(주)○○ ○○○ ○	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동 000-0	○○○	부산00 바0000	2014. 12. 12. (2015. 1. 27.)	중상 17 (안전운전 의무위반)	부산진구	(○○○)
2	(주)○○ ○○○ ○○	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로 000	○○○	부산00 바0000	2016. 4. 6. (2016. 5. 27.)	중상 10 (안전운전 의무위반)	영도구	(○○○)
3	(주)○○ ○○○ ○○	부산광역시 ○○○구 ○○동 000-00	○○○	부산00 바0000	2014. 4. 3. (2014. 5. 28.)	중상 10 (안전운전 의무위반)	연제구	(○○○)

※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나. 화물자동차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[별표1]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¹⁹⁶⁾은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[별표1] 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¹⁹⁷⁾, 감차¹⁹⁸⁾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강서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5. 6. 1.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시 ○○○구 ○○○동 00동 000호에 있는 (주)○○○○ 소속 화물자동차(운전자 ○○○, 차량번호: 부산00아0000)가 2015. 4. 6. ○○북도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마을

196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,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이 취소 및 효력의 정지,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재위임

197) 중상자(2명이하: 운행정지 5일, 3명~4명: 운행정지 15일, 5명~9명: 운행정지 30일)
사망자(2명이하: 운행정지 30일, 3명~4명: 운행정지 60일)

198) 중상자(10명 이상: 1대 감차)
사망자(5명~9명: 1대 감차, 10명 이상: 2대 감차)

입구 앞 교차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통사고로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10개¹⁹⁹⁾ 구청에서는 22건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통보사항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

부산광역시장, 부산진구청장, 영도구청장, 연제구청장, 남구청장, 동구청장, 강서구청장, 금정구청장, 동래구청장, 기장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부산진구청장, 영도구청장, 연제구청장, 남구청장, 동구청장, 강서구청장, 해운대구청장, 금정구청장, 동래구청장, 수영구청장, 사하구청장은

[통보]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(주)○○○○○○ 등 3명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(주)○○○○ 등 22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199) 강서구, 남구, 동구, 동래구, 연제구, 영도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수영구, 사하구